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합니다

Q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럽촬영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현지 코디, 차량 렌트, 번역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율 적용은 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지요?

A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정부지원 환급금 문의

Q 교육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이수를 하였는데 정부지원금 환급이 가능한 교육이라서 일부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금 : 10만원 미만)
환급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교육비용에서 차감시키는지, 기타매출로 반영하는지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등은 기타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물 매입세액 공제

Q 기숙사 용도로 샀으나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임원이나 거래처 사용 건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부가세와 법인세에서 처리방향은?

A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아닌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 사업용건물 취득시 자산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 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 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Q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오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사용가능기한이 일부 늘어도 수익적지출로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